

부산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2가단338577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1. B 주식회사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권신혜

3.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호택

4.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유

담당변호사 최인석, 김준형

5. 주식회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권신혜

6.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류승용

7. 주식회사 I

변론 종결2024. 6. 25.

판결 선고2024. 10. 29.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222,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4.부터 2022. 9. 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9%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G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2022. 6.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6. 22. 접수 제275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 F, H, 주식회사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C 사이에 2021. 12. 30.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69,222,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4.부터 2022. 9. 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9%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169,222,89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4.부터 2022. 9. 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9%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원리금 합계액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F에 대한 청구: 피고 F와 피고 C 사이에 2021. 12. 8.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F는 피고 C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2. 8. 접수 제719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F와 피고 C 사이에 2022. 6. 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69,222,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4.부터 2022. 9. 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9%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F는 원고에게 169,222,89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4.부터 2022. 9. 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9%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원리금 합계액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H에 대한 청구: 피고 H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27. 및 2021. 12. 2.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5.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I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2022. 5. 13.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69,222,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4.부터 2022. 9. 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9%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I은 원고에게 169,222,89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4.부터 2022. 9. 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9%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원리금 합계액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약정 체결과 보험금 지급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는 J와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21. 4. 8.	200,000,000	2021. 4. 9. ~ 2022. 4. 30.	J
-------------	-------------	----------------------------	---

2)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J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B을 대위하여 변제하게 될 경우,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의, 30일 경과 후부터는 연 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 및 피고 C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4조(사전구상)

본인(피고 B)과 보증인(피고 C)은 회사(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고 본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에 대한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며, 회사에 해당 채무액을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또는 최고 없이 본인과 보증인에게 사전상환을 위한 채권행사(사전구상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 내지 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행사 전에 미리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2. K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3. 파산회생(개인회생 포함)절차 개시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4. 본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 또는 이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된 담보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납기전 납부고지 포함)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때

5. 영업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한 때

6. 회사와 본인 사이에 체결된 다른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7. 제4호 이외의 본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압류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납기전 납부고지 포함)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본인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회사의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8. 허위자료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J는 2022. 7. 5. 원고에게, 피고 B이 외상물품대금 채무를 미지급하여 2022. 4. 2.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67,846,289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2. 8. 3. L에 지체상금을 포함한 보험금 169,222,89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의 처분행위

1) 피고 C는 2021. 12. 30. 피고 D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0억 원(계약금 3억 원, 잔금 17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처분행위'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2022.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2021. 12. 8. 피고 F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2처분행위'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F는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는 2022. 6. 2. 피고 F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을 매매대금 8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3처분행위'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F는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의 처분행위

1) 피고 B는 2022. 6. 21. 피고 G에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1,421,417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4처분행위'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G는 같은 달 2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피고 H에게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0. 27.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5처분행위'라 한다)을, 2021. 12. 2.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6처분행위'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H은 각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22. 5. 13. 피고 I에 이 사건 제4부동산을 매매대금 26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7처분행위'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7처분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I은 같은 달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22. 8. 3. L에 원고를 대위하여 외상물품대금 및 지체상금 합계 169,222,8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69,222,8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다음 날인 2022. 8. 4.부터 30일 후인 2022. 9.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22. 11.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F, G, H, I에 대한 청구(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H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 H이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4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27. 및 2021. 12.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5, 6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으로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H은 피고 I이 2022. 5. 27. 이 사건 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피고 H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비록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지만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후행 양도계약 당시 당해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그 결과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및 반환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H이 이 사건 5, 6처분행위에 따라 이 사건 4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I이 이 사건 4부동산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말인 2022. 5. 27.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로 인하여 마쳐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후행 양도계약인 이 사건 7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4부동산의 잔존가치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7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반환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I이 이 사건 7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그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5, 6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H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피고 B와 사이에 2019. 10. 4. 보험금액을 3억 원, 2억 원, 피보험자를 M으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22. 7. 6. 2019. 10. 4.자 각 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2022. 8. 2. M에 보험금 281,559,661원(= 143,220,327원 + 138,339,334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및 2019. 10. 4.자 각 보험계약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B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7,809,518,053원을 차용하는 등 15,210,764,024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던 상태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를 상환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 피고 B은 J에 2022. 3. 28. 및 2022. 5. 30. 정산 연기요청을 하여 예정된 결제일을 도과시켰고, N조합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2022. 6. 8. 변제촉구와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받았으며, 피고 C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적조치 통보가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2022. 4. 2. 및 같은 해 7. 6. 이 사건 보험계약 및 2019. 10. 4.자 각 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이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및 2019. 10. 4.자 각 보험계약에 따른 450,782,551원(= 169,222,890원 + 281,559,661원)의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더라도 단순히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거나 별건의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82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피고 B와 사이에 2019. 10. 4. 보험금액을 3억 원, 2억 원, 피보험자를 M으로 하는 2건의 보증보험계약(이하 '2019. 10. 4.자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C는 2019. 10. 4.자 보험계약 중 보험금액 3억 원의 보험계약상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22. 7. 6. 2019. 10. 4.자 각 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22. 8. 2. M에 보험금 281,559,661원(= 143,220,327원 + 138,339,334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O조합, P은행, 중소벤처사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Q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이 법원의 포항시 남구청장, 경주시장, 사단법인 K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비록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 및 2019. 10. 4.자 각 보험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던 상태라 하더라도 이 사건 1, 2, 5, 6 처분행위 당시에는 피고 B가 가까운 장래에 J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를 일으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B가 이 사건 1, 2, 5, 6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를 일으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C에 대하여도 이 사건 1, 2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사전 구상금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제1, 2, 5, 6 처분행위는 2021. 10. 27.부터 2021. 12. 30.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다.

(2) 피고 B는 스테인레스, 정밀강관, 각종 철강제품, 기계제작 제조업 및 위 관련제품 판매, 수출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20억 6,000만 원의 법인으로, 2021. 10. 27.부터 2021. 12. 30.까지 사이에 공장건물 및 부지인 이 사건 제3, 4부동산과 포항시 남구 R외 2필지 S건물 T호(이하 'S건물 T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3부동산과 그 지상 기계기구의 2010. 10. 26. 기준 가액은 10,492,221,000원이고, 이 사건 4부동산과 그 지상 기계기구의 2022. 5. 19. 기준 가액은 3,181,399,920원이며, S건물 T호의 2017. 1. 25. 거래가액은 2억 원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1, 2, 5, 6 처분행위 당시 합계 13,873,620,920원(= 10,492,221,000원 + 3,181,399,920원 + 2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1, 2, 5, 6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3부동산에는 한국산업은행의 2020. 11. 17.자 채권최고액 90억 원 및 미합중국법화 120만 달러의, 2021. 3. 4.자 채권최고액 미합중국법화 120만 달러의 각 근저당권(2021. 12. 31. 기준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74억 9,100만 원1))과 U대부의 2021. 12. 16.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4부동산에는 V은행의 2020. 8. 3.자 채권최고액 28억 8,000만 원 및 2020. 8. 3.자 미합중국법화 120만 달러의 각 근저당권(실제 대출액 합계 23억 7,800만 원 = 2020. 3. 19.자 2억 원 + 2020. 8. 3.자 13억 800만 원 + 2020. 8. 3.자 1억 5,000만 원 + 2021. 2. 3.자 7억 2,000만 원)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5) S건물 T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W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23. 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X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 신고한 채권자들(W은행, H, Y은행, 경주세무서장,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Z카드, V은행, 원고)이 경매사건에 신고한 채권 합계액은 4,003,378,281원이다(2022년 이후 설정된 가압류등기의 피보전권리 또는 위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법원에 신고된 채권액으로, 이 사건 1, 2, 5, 6 각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는 더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한국산업은행은 피고 B에 2020. 11. 17. 3,591,900,000원을 이자율 연 3.01%로 정하여, 2021. 11. 17. 3,465,000,000원을 이자율 연 3.36%로 정하여 각 대출하여 주고 위 (4)항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각 대출일부터 2021. 12. 31. 까지 B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한 내역이 없다. V은행의 위 (4)항 기재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여신원장조회내역을 살펴보면, 대출이자율이 연 8.22%, 연 5.56%, 연 5.93%, 연 3%로 확인되는데, 2022. 5. 27.까지 연체횟수가 "0"으로 표시되어 있다.

(7) N조합은 2019. 10. 11. 피고 B에 2억 6,400만 원 및 2억 5,500만 원을 각 대출하여 주었는데, 피고 B은 2022. 4. 11.에 비로소 위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연체원금: 149,386,156원 + 135,601,750원), N조합은 2022. 5. 8.에 대출금 상환이 연체하여 법적조치 등을 통한 강제회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최고장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 실제 K에 등록된 피고 B의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신용정보조회내역을 살펴보면, 2022. 8.경 AA카드대금 5,511,000원의 연체를 시작으로 금융기관들의 연체정보가 등록되었고, 그 이전에는 연체 등을 이유로 한 신용정보등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9) 이 사건 보험사고 역시 피고 B이 J에 대한 2022. 3. 31.자 외상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2022. 4.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B은 2022. 3. 28. 최초로 J에 물품대금 지급기한의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이전에는 J에 대한 물품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10)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은 이 사건 1, 2, 5, 6 처분행위 당시 소극재산²⁾ 이 적극재산³⁾ 을 초과하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출이자 또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며, 거래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연체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1) 피고 C는 2014. 12. 10. B이 설립된 때부터 2022. 7. 14.까지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21. 1. 27.부터 2021. 12. 30.까지 이 사건 1, 2부동산과 부산 남구 AB 임야 27,556m² (이하 'AB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1부동산과 그 지상 기계기구의 2022. 1. 27. 기준 가액은 3,141,310,700원이고, AB 임야의 2019. 1. 10. 기준 가액은 658,944,000원⁴⁾ 이며, 이 사건 2부동산의 2022. 6. 2. 거래가액은 8억 원이다.

(12) 피고 C는 2014. 12. 3. O조합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12. 3.부터 2022. 3. 3.까지 기간 중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1일씩 4회 늦게 납부한 것 외에는 이자를 연체한 내역이 없다.

(13) 피고 C는 2020. 1. 1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8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20. 2. 17.부터 2022. 4. 18.까지 기간 중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1일씩 2회 늦게 납부한 것 외에는 이자를 연체한 내역이 없다.

(14) 이처럼 피고 C의 이 사건 1, 2 처분행위 당시에는 피고 B이 금융기관에 대출이자 또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있었고, J 등 거래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 C 역시 금융기관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한 바 없는 상태였다.

(15) 한편,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 직전 달인 2022. 3. 11. 피보험자를 AC로, 보험금액을 8억 5,360만 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다음 달인 2022. 5. 2. 피보험자를 AD, 보험금액을 9,900만 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로서는 피고 B의 경영상태, 신용상태 등을 조사하여 추가적인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및 2019. 10. 4.자 각 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1, 2, 5, 6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1처분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 피고 F에 대한 이 사건 2처분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피고 H에 대한 이 사건 5, 6처분행위에 대한 각 취소청구는 원고 및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는 2022. 4. 2.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제4조 제1호에 따라 원고는 피고 B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C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사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2. 7. 6. 2019. 10. 4.자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2. 8. 2. 및 같은 달 3. 이 사건 보험계약 및 2019. 10. 4.자 각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J에 169,228,890원을, M에 143,220,327원, 138,338,334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3, 4, 7 처분행위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이후로서 피고 B이 거래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고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2022. 4.경 이후인 2022. 5. 13.부터 2022. 6. 21.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3, 4, 7 처분행위 당시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 및 2019. 10. 4.자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및 2019. 10. 4.자 각 보험계약에 따른 합계 450,787,551원(= 169,228,890원 + 143,220,327원 + 138,338,334원)의 구상금채권은 피고 B와 피고 AE, I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4, 7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보험계약 및 2019. 10. 4.자 보험금액 3억 원의 보험계약에 따른 합계 312,449,217원(= 169,228,890원 + 143,220,327원)의 구상금채권은 피고 C와 피고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3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3, 4, 7 처분행위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하여 본다.

다. 이 사건 3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F가 피고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3처분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피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인 이 사건 2부동산을 피고 F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 C의 무자력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3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F

이 사건 3처분행위 당시 C는 무자력 상태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3처분행위 당시인 2022. 6. 2. 기준 이 사건 2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2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2부동산은 그 잔존 가치가 없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3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이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올라 제2호증의 1, 2, 올라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3처분행위일인 2022. 6. 2.을 기준으로 이 사건 2부동산에는 ① 2014. 12. 13.자

근저당권자 O조합의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21. 5. 24.자 근저당권자 피고 F의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21. 12. 8. 근저당권자 피고 F의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2처분행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다)가 각 마쳐져 있던 사실, 위 ①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400,988,880원인 사실, 피고 F는 2021. 11. 22. 피고 B에게 1억 원을 월 이자 200만 원으로 정하여, 2021. 12. 2. 피고 B에게 2억 원을 월 이자 4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대여하여 주고 2021. 12. 8. 피고 C의 AB 임야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③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3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3부동산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3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인 8억 원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②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 채권최고액을 이 사건 3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으로 인정한다.

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2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합계액은 900,988,600원(= 400,988,600원 + 5억 원 + 2억 원)은 이 사건 2부동산의 가액(8억 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2부동산은 피고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설령 피고 C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2부동산을 피고 F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4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 및 2019. 10. 4.자 각 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채권이 이 사건 4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사해행위 판단 기준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22. 6. 21. 피고 G에게 이 사건 3부동산 전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3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6. 22. 접수 제27555호로 채권최고액 721,421,417원, 근저당권자 피고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일괄하여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3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3) 통정허위표시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을바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G는 피고 B과 2022. 3. 14. 물품대금 143,452,012원, 85,729,087원, 95,470,342원의 각 수입물품 구매대행 공급계약을, 2022. 5. 31. 물품대금 331,186,214원의 수입물품 구매대행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4처분행위가 피담보채권이 없이 이루어져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B의 무자력 인정 여부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4처분행위일인 2022. 6. 21. 기준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3부동산과 그 지상 기계기구(가액 10,492,221,000원)와 S건물 T호(가액 2억 원)로, 그 가액 합계액은 106,492,221,000원이 되고, 2022. 6. 21. 기준 피고 B의 소극재산은 합계 12,671,698,905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 및 2019. 10. 4.자 각 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450,782,551원의 채무 + 피고 G의 655,837,655원(= 143,452,012원 + 85,729,087원 + 95,470,342원 + 331,186,214원)의 물품대금채무 +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7,606,775,000원의

채무 + U대부에 대한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한 5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 S건물 T호의 근저당권자 W은행의 146,3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 S건물 T호의 근저당권자 H의 7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 2022년 7월 내지 10월 사이에 S건물 T호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들인 Y은행(215,496,906원), 기술보증기금(1,496,500,000원), 중소기업은행(29,323,942원), Z카드(10,441,851원), V은행(1,006,541,000원)의 채무5) 합계액 2,758,303,699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 B의 적극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상태에서 일반 물품대금 채권자인 피고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이 사건 4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피고 G는 2022. 3. 14. 및 2022. 5. 31.을 기준으로 피고 B의 무자력을 판단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 대상은 피고 G의 B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권 발생 원인인 수입물품 구매대행 공급계약이 아닌 물품대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체결된 2022. 6.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므로, 피고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G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행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G가 2022. 3. 14. 및 2022. 5. 31. 피고 B와 사이에 물품대금 합계 655,837,655원 상당의 수입물품 구매대행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위 물품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4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정 및 피고 G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G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G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 피고 G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이 사건 7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I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7처분행위에 따른 매매대금 26억 원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매매대금액 자체도 이 사건 4부동산의 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졌다.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4부동산을 피고 I에게 양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7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I

이 사건 7처분행위 당시 피고 I이 사건 4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4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4부동산은 그 잔존 가치가 없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7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사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7처분행위 당시인 2022. 5. 13.을 기준으로 이 사건 4부동산에는 ① 2020. 8. 3.자 근저당권자 V은행의 채권최고액 28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20. 8. 3. 근저당권자 V은행의 채권최고액 미합중국법화 120만 달러(원화 환산금액 14억 2,692만 원)6)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21. 10. 27. 근저당권자 피고 H의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5처분행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2021. 12. 2.자 근저당권자 피고 H의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6처분행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던 사실, 이 사건 7처분행위 무렵인 이 사건 4부동산의 2022. 5. 19. 기준 가액은 3,109,139,920원(토지 1,516,248,000원 + 건물 1,592,891,920원)인 사실,

2020. 8. 3. 위 ①, ② 근저당권설정 당시 V은행의 실제 대출액은 합계 23억 7,800만 원(= 2020. 3. 19.자 2억 원 + 2020. 8. 3.자 13억 800만 원 + 2020. 8. 3.자 1억 5,000만 원 + 2021. 2. 3.자 7억 2,000만 원)이었던 사실, V은행이 2021. 12. 1. 발행한 부채증명서상 2021. 11. 30. 기준 피고 B에 대한 위 대출금 매추의 채무 합계액은 33억 3,250만 원인 사실, 피고 H은 피고 B의 대표자인 피고 C에게 2021. 9. 19. 수표금 4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2021. 10. 26. 수표금 3억 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7처분행위일인 2022. 5. 13. 기준 V은행의 ①, ② 근저당권에 기한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33억 3,250만 원[채권최고액은 43억 692만 원(= 28억 8,000만 원 + 14억 2,692만 원)]이고, 피고 H의 ③, ④ 근저당권에 기한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7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실제 피담보채권액의 합계액 40억 3,250만원(= 33억 3,250만 원 + 7억 원)은 이 사건 4부동산의 가액인 3,109,139,92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4부동산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4부동산을 피고 I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 C,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 F, H, I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반호림

별지

1) 최권최고액 미합중국법화 120만 달러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21. 3. 5.자 및 2021. 9. 28.자 외화수입신용장발행대출로, 최초여신액은 각 미합중국법화 0달러이고, 여신기한 만료일인 2022. 3. 5.에 미합중국법화 134,855.16달러(원화 환산잔액 159,870,792원), 2022. 9.

29.에 미합중국법화 499,997.69달러(원화 환산잔액 592,747,261원)의 대출금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12,279,366,187원(= 7,491,000,000원 + 500,000,000원 + 4,003,378,281원 + 149,386,156원 + 135,601,750원) 이하인 금액

3) 13,873,620,920원(= 10,492,221,000원 + 3,181,399,920원 + 200,000,000원)

4) 원고는 2023. 7. 13.자 준비서면에서 AB 임야의 가액이 603,476,400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Q조합이 2019. 2. 14. AB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감정한 2019. 1. 10. 기준 감정평가액은 658,944,000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가압류등기를 마친 날이 2022. 7. 26.부터 2022. 10. 25.까지이므로, 피보전권리는 일부 이자 상당액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4처분행위 당시에는 이미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실제 V은행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경매절차에는 1,077,843,956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2022. 6. 17. 기준 채권액은 1,006,541,000원으로 확인된다.

6) 2020. 8. 3. 기준 환율 1,189.10원 기준